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원희룡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1. 의결주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전기차 배터리 리스 등 배터리 관련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,
배터리 리스 서비스 제공 시 등록원부에 배터리가 대여 된 장치임을 명기

3. 주요내용

가. 배터리를 대여한 경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기재토록 함(안 제8조
의2제6항제7호 신설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O와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6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)	제8조의2(등록원부의 기재방법 등)
① ~ ⑤ (생 략)	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등록원부의 사항란에 그와 관련된 사항을 적어야 한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.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</u> <u>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</u>
⑦ ~ ⑨ (생 략)	⑦ ~ ⑨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	
연 락 처	(044) 201 - 3856